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차 별 시 정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715500 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에  
서의 불리한 대우

진 정 인 ○○○

피진정인 ○○연구소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4. 20. 피진정인이 공고한 채용절차에 응시한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연구소장(이하 '피진정연구소'라 한다)이다. 피진정인은 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 합격자인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였는데, 신  
원조사 결과 “특이점 있음[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처분]”  
으로 통보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회의를 개최하였고, 최종 '부적격' 판

단에 따라 진정인에게 최종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과를 이유로 고용(채용)영역에서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다.

##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연구소는 □□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속을 받는바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도록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7646호) 제4조(직무),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업무훈령」(□□□□훈령 제2425호) 제69조(신원조사) 등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자의 과거 비위 사실을 조회하고 있는데 △△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있음’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는 피진정연구소 인사관리지침 제25조(채용확정) 제2항에 따라 경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직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2021. 7. 13. ‘특이점 있음’이 통보되었다. 이후 채용 공고에 게시하고 전형 진행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메일로 안내한 것처럼 피진정연구소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2021. 7. 16.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심의회의에서는 ‘진정인의 비위 행위가 소위 ‘윤창호법’(20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 처분된 행위로 공직자로서 청렴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에게 임용 ‘불가’로 통보하였다.

다.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신원 특이점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한 부적격 처분 취소는 어렵다. 다만 신원조회 ‘특이점 있음’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9.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 2. 8. △△△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을 선고받았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나. 진정인은 2021. 4. 20. 피진정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일반 연구직인 ‘△△△△ 개발관리’ 분야에 응시하였다. 해당 분야는 공학·자연·사회 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전공과 상관없이 국방·방위산업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다. 위 공고에서는 채용 결격사유로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신체검사결과 채용결격 판정된 자, ④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중에 있는 자, 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 6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고 4. 전형안내’에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해

서는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원특이자는 임용 적격여부 심의를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적격자에 한해 임용”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라. 피진정연구소의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로 진행되며, 진정인은 1차, 2차 전형에 합격하여 신원조사와 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마. 2021. 7. 13.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특이점 있음’으로 통보됨에 따라 피진정연구소는 「○○연구소 인사관리지침」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2021. 7. 16. 경영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심의 후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21. 7. 20. 진정인에게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다.

바. 피진정연구소의 「○○연구소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영지원위원회는 기획조정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제외한 경영지원부 소속 팀장급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직원 중에서 기획조정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중 2인 이상은 타본부 또는 센터(부) 소속이어야 한다.

사. 피진정연구소의 징계규정 중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과 감봉,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처리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도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 등으로 징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 4. 판단

#####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포함한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 다. 합리성 여부

1)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하려면 전과 이력이 그 업무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과의 내용은 직무와의 상관성 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특정한 전과나 혐의사실이 업무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전과 경력과 업무의 상관성을 판단할 때 전과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보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①범죄의 종류, ②범죄사실의 심각성과 문제되는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③범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④범법의 경향(상습성 등) 등이다.

2)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①진정인이 지원한 △△△△ 개발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진정인이 지원할 당시에는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점, ③진정인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④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⑤피진정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4.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이 준 일

위원 김 수 정